

학교법인한성학원정관

[법인사무국, 2019.2.26.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 복음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학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하 “우리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6.11.1.)

제 3 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경성대학교
2. (삭제)
3. (삭제)

제 4 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에 둔다.(개정 2011.12.13.)

제 5 조(정관의 변경) ①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보고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4.) (조 개정 2012.7.20.)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산

제 6 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계

제 9 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9 조의 2(예산·결산의 공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신설 2005.9.12.)

제 10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삭제 2006.10.30.)

제 13 조 내지 제 17 조 (삭제 2006.10.30.)

제 18 조 내지 제 21 조 (삭제)

제 3 장 기관

제 1 절 임원

제 22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개정 2006.5.16.)

2. 감사 2인

②제1항의 이사중 2명은 개방이사로 한다.(신설 2006.10.30.)

제 22 조의 2(상근임원) ①제22조의 임원중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신설 2006.5.16., 개정 2010.9.30.)

②상근하는 임원에게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역 및 금액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신설 2017.12.22.)

제 23 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단,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6.10.30.)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4 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30.)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개정 2005. 9. 12.)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8.1.14.)

제 24 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립자의 창학정신과 건학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조 신설 2006.10.30.)

제 24 조의 3(개방이사의 추천)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2배수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14.)

②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8.1.14.)

③(삭제 2008.1.14.) (조 신설 2006.10.30.)

제 24 조의 4(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 평의원 중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조 신설 2008.1.14.)

제 25 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0.30.)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변호사협회·한국세무사회 또는 이들의 부산지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05.9.12.)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10.30., 개정 2008.1.14.)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10.30.)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 26 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5.9.12.)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삭제 2008.1.14.)

제 27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

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8 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1.12.13.)

제 29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30 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우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우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우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06.10.30, 개정 2008.1.14.) (조 개정 2016.11.1.)

제 2 절 이사회

제 31 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2 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최하지 못한다.(개정 2006.10.30.)

②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0.30.)

제 33 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34 조(이사회회의 소집 및 사전 공개)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일시, 장소, 안건 등 주요 사항을 회의 7일전까지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인사에 관한 사항은 회의 종료 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8.2.7.)

제 34 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조 신설 2006.10.30., 개정 2018.2.7.)

제 35 조(이사회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 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0.30.)

제3절 사학윤리위원회(신설 2005.9.12.)

제 35 조의 2(사학윤리강령준수) ①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 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별표3)을 준수한다.

②이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제 36 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36 조의 2(사회복지사업) 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07.3.8.)

제 36 조의 3(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8.11.12.)

제 37 조(삭제)

제 38 조(수익사업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법인 사무소에 둔다.

제 39 조(삭제)

제 5 장 해산

제 40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고 또는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제 42 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원

제 1 관 임용

제 43 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10.30., 2008.1.14., 2014.7.24.)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01.3.12., 2013.12.5., 2014.2.28.)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신규로 임용될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
2. 부교수 : 3년 이내의 기간. 다만, 2013.2.28. 이전에 임용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정년보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년까지의 기간
3. 조교수 : 3년 이내의 기간

③제2항의 교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학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5.9.12., 개정 2013.12.5.)

④특수한 교과목 전공자, 외국인, 재외 한국인 학자와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국내·외 대학, 연구소 또는 관련 전문 분야 종사자 등의 사유로 특별 채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장은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5.9.12.)

⑤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05.9.12.)

⑥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이 보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1.3.12., 2013.12.5.)

1. 근무기간 : 정관 제43조제2항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정관 제49조로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진로상담, 학생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⑩(삭제)

⑪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동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또는 본인의 사의에 의해 면직될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에서 면직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학교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단, 징계에 의한 자진사임은 제외한다.)(신설 2009.2.6.)

제 43 조의 2(임시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 44 조(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3., 2016.11.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5.5.21.)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개정 2012.12.1., 2013.12.5.)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13.12.5.)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2016.11.1.)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3.12.5.)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게 된 때(신설 2012.12.13.)
- ②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16.11.1.)

제 45 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

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6의2. 제44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6.11.1.)

7.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조 개정 2017.2.2.)

제 46 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17.2.2.)

제 47 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06.5.16., 2017.2.2.)

②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16., 2016.11.1.)

제 48 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삭제 2014.7.24.)

②임용권자는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7.24.)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개정 2014.7.24.)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신설 2014.7.24.)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6.8.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7.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보수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06.5.16., 2014.7.24.)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에 기간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7.24.)

⑧제2항제1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6.11.1.)

제 49 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9 조의2(명예퇴직) ①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조 신설 2015.10.29.)

제 50 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0 조의 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51 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2 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01.3.12., 2012.7.20.)

2. (삭제 2014.10.21.)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제청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 53 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삭제)

③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4 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교원인 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5 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6 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 57 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58 조(운영시행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59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우리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우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또는 우리 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6.8.23.)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우리 법인이나 우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

이 아닐 것(신설 2016.8.23.)

제 60 조(삭제)

제 61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2 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3 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 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63 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63 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64 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5 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8.23., 2016.11.1.)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6 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66 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성범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14.7.24., 2015.5.21.)

제 67 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68 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삭제)

제 69 조 내지 제 82 조 (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 83 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행정직군,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군을 포함 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

다.(개정 2008.1.14., 2016.1.19.)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6.1.19.)

③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84 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1.12.13., 2014.5.22.)

제 85 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6 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무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 86 조의2(명예퇴직) 일반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15.10.29.)

제 87 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8 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외부위원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8.23.)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제

제 1 절 법인

제 89 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과 법인법무국을 둔다.(개정 2016.5.17., 2017.8.29.)

②법인사무국과 법인법무국에는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8.26., 2016.5.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직원의 급여 및 수당은 이사장이 정한다.(신설 2018.11.12.)

제 2 절 대학교

제 90 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학무부총장, 기획부총장, 대외산학협력부총장, 행정지원부총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1.12.13., 2013.1.24., 2014.5.22., 2017.2.2., 2017.8.29.)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부총장의 소관부서는 대학의 직제규정에서 정한다. 또한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13.)

⑤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총장실을 둔다.(개정 2010.3.1., 2011.12.13., 2017.8.29.)

⑥대학교에 교목실, 산학협력단, 경성사회봉사단, 학생군사교육단, CK사업단,

연구윤리센터, 법무감사실 등을 둔다.(개정 2004.1.9., 2010.3.1., 2011.12.13., 2012.12.13., 2014.2.28., 2014.8.26., 2014.10.21., 2015.08.25., 2016.1.19., 2017.8.29.)

제 91 조(학장·대학원장) ①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학장,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09.1.15.)

②(삭제 2019.2.26.)

③학장,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09.1.15.)

④학장, 대학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장, 교학부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11.12.13., 개정 2013.2.19., 2017.8.29.)

제 92 조(대학본부의 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교육연구처, 학생지원처, 기획조정처, 입학관리처, 대외협력처, 행정지원처, 문화홍보처, 취업진로처를 둔다.(개정 2006.5.16., 2010.3.1., 2012.12.13., 2016.1.19.)

②(삭제 2017.8.29.)

③(삭제 2017.8.29.)

④(삭제 2017.8.29.)

⑤각 처의 하위부서 및 업무 분장은 대학의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6.5.16., 2009.1.15., 2011.11.29., 2017.8.29.)

⑥(삭제 2006.10.30.)

⑦(삭제 2011.11.29.)

⑧(삭제 2011.11.29.)

⑨(삭제 2011.11.29.)

제 93 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대학교의 단과대학, 대학원에 행정실을 둔다.(개정 2009.1.15.)

②행정실에는 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1.11.29., 2017.8.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은 대학의 사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11.29.)

제 93조의2 (학부장 및 학과장) ①대학의 학부(과)에는 학부(과)장, 전공에는 전공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학과나 전공에는 학과(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2.13.)

②대학의 학부(과)장(전공지도교수 포함)은 대학원의 학과(전공)주임교수를 겸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의 학부(과)나 전공이 다르거나 관련 학부(과) 또는 전공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학과(전공)주임교수는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따로 임명한다.(개정 2012.12.13.)

③학부(과)장과 전공지도교수, 학과(전공)주임교수는 학부(과)나 전공의 운영을 통할하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학생 지도에 관하여 학(원)장을 보좌한다.(조 신설 2011.11.29.)

제 94 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등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삭제 2017.8.29.)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의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11.29., 2017.8.29.)

제 95 조(삭제)

제 3 절 (삭제)

제 96 조 내지 제 99 조 (삭제)

제 4 절 (삭제)

제 100 조(삭제)

제 101 조(삭제)

제 5 절 정원

제 102 조(정원) 법인 및 경성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대학평의원회 (신설 2006.10.30.)

제 103 조 (대학평의원회 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104 조 (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지역인사 또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명(개정 2015.2.3.)
2. 직원 2명(개정 2015.2.3.)
3. 학생 2명(개정 2015.2.3.)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4명(개정 2015.2.3.)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05 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106 조(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07 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 개정 2008.1.14.)

제 108 조(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 109 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부산일보에 공고한다.

제 110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111 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김영호	1901. 5. 15	4 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1가 46-2
이 사	김길창	1892. 11. 11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1가 10번지
"	이원태	1907. 6. 10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1가 231번지
"	정재홍	1924. 10. 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9번지
"	이상강	1911. 7. 22	2 년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3가 55번지
"	변주단	1908. 3. 2	"	경북 금릉군 화항면 세송리 445번지
"	김근제	1921. 7. 13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1가 10번지
"	오경환	1906. 4. 5	"	경남 밀양군 삼량진 송수리 352번지
"	백옥자	1924. 12. 31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1가 10번지
감 사	정일중	1926. 8. 10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1가 10번지
"	김용달	1901. 9. 17	1 년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동 1가 95번지

부 칙(1998.4.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4월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부산 신학교는 2007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휴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관과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경성대학교에서 관리한다.(개정 2004.2.14.)

제 3 조(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부산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2000년 2월말 일까지 경성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경성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 보되,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부산신학교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

는 부산신학교의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경성대학교가 포괄 승계한다.

부 칙(2001.3.12.)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제43조 제5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9.18.)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2.14.)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24.)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9.12.)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기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유지한다.

부 칙(2006.5.16.)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30.)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8.)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4.)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학교법인한성학원정관 1-0-1~24

부 칙(2008.1.24.)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13.)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5.)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와 제92조의 2부
과정부에 관한 사항은 2009년 2월 28일자로 폐지한다.

부 칙(2009.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6일 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의 장 임기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개정 정관 시행일 현
재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의 임기는 3년 6개월로 한다.

부 칙(2010.3.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8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30.)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9.)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3.)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20.)

(시행일) 제5조의 변경사항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제43조와 제52조의 변경사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3.)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변경사항 중 제90조와 제92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제93조의2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19.)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2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0조제6항 중 교육역량강화사업단은 교육부의 사업 종료에 따라 최종 사업결과보고 후 자동 폐지한다.

부 칙(2014.5.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24.)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7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의 장 임기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의 임기는 3년 11개월로 한다.

부 칙(2015.2.3.)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1.)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29.)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0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19.)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17.)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23.)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59조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 11.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29.)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8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2.)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7.)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12.)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개 정

1964년 1월 25일
1965년 2월 24일
1974년 10월 22일
1975년 9월 4일
1975년 10월 25일
1976년 4월 7일
1977년 11월 1일
1978년 9월 8일
1979년 3월 1일
1980년 6월 26일
1981년 1월 14일
1981년 9월 30일
1983년 11월 12일
1984년 4월 1일
1985년 7월 1일
1986년 7월 3일
1988년 5월 1일
1990년 2월 15일
1995년 6월 12일
1997년 5월 8일
1997년 11월 21일
1998년 4월 1일
2000년 3월 20일
2001년 3월 12일
2003년 9월 18일
2004년 2월 14일
2005년 5월 24일
2005년 9월 12일
2006년 5월 16일

2006년	10월	30일
2007년	3월	8일
2008년	1월	14일
2008년	1월	24일
2008년	8월	13일
2009년	1월	15일
2009년	2월	6일
2010년	3월	1일
2010년	8월	26일
2010년	9월	30일
2011년	11월	29일
2011년	12월	13일
2012년	7월	20일
2012년	12월	13일
2012년	12월	13일
2013년	1월	24일
2013년	2월	19일
2013년	12월	5일
2014년	2월	28일
2014년	5월	22일
2014년	7월	24일
2014년	8월	26일
2014년	10월	21일
2015년	2월	3일
2015년	5월	21일
2015년	8월	25일
2015년	10월	29일
2016년	1월	19일
2016년	5월	17일
2016년	8월	23일

학교법인한성학원정관 1-0-1~30

2016년	11월	1일
2017년	2월	2일
2017년	8월	29일
2017년	12월	22일
2018년	2월	7일
2018년	11월	12일
2019년	2월	26일

<별표 1>(개정 2014.7.24., 2016.1.19.)

법인 일반 직원 정원

총 계	24명
-----	-----

일 반 직	행정직군 계	14명
	2급	1명
	3급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관리운영직군 계	9명
	6급 계	1명
	건축장	1명
	10급 계	8명
	운전원	3명
	전기원	1명
	기계원	1명
	사무보조원	2명
	방호원	1명
	사무운영직군 계	1명
	9급	1명

<별표 2>(개정 2001.3.12., 2005.5.24., 2011.11.29., 2014.7.24., 2016.1.19.)

학교 일반 직원 정원

	구 분	경성대학교
	총 계	210명
일 반	행정직군 계	110명
	1급	1명
	2급	2명
	3급	4명
	4급	12명
	5급	33명
	6급	48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직	관리운영직군 계	50명
	6급	5명
	7급	12명
	8급	17명
	9급	10명
	10급	6명
	사무운영직군 계	50명
9급	50명	

<별표 3>(신설 2005. 9. 12.)

私學倫理綱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私學은 나라와 겨레의 發展을 선도해 왔다.

이처럼 빛나는 傳統을 이어 받은 우리 私學은 지금, 새 세기의 文明史的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며,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고 知識基盤 社會를 선도할 創意的이고 道德的으로 成熟된 人材를 養成할 歷史的 責務를 附與 받고 있다.

이에 우리 私學經營者 일동은 教育立國의 使命感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私學의 公共性和 自律性を 더욱 드높이고자, 뜻을 모아 私學倫理綱領을 採擇한다.

우리는 良心과 矜持를 가지고 이 綱領을 遵守하며, 이에 違背되는 경우에는 勸勉과 制裁로 이를 自律的으로 是正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建學精神

우리는 私學의 뿌리가 崇高한 建學精神에 있음을 銘心하며, 오로지 그 높은 뜻을 繼承하고 實現하는 일에 獻身한다.

公共性

우리는 私學經營에 있어서 學園內外的 個人이나 集團의 사사로운 利害關係를 초월하여 公共性的 原則을 尊重함으로써 教育福祉理念을 具現하는데 最善을 다한다.

自主性

우리는 教育의 自主性和 專門性, 政治的 中立性を 保障한 憲法精神에 立脚하여, 私學의 本質을 侵害하는 어떠한 規制나 干涉도 斷乎하게 排擊하며, 自律的으로 教育方針을 實踐하여 私學의 特殊性을 昂揚한다.

經營合理化

우리는 私學經營을 合理化·效率化하고, 모든 教育資源을 公正하고 透明하게 管理·保護함으로써, 教育效果를 極大化하는 일에 우선적인 努力을 傾注한다.

和合·協力

우리는 私學 構成員 모두가 自發的으로 參與하고 獻身할 수 있도록, 和合·協力하는 教育環境을 助成하며, 모든 構成員의 正當한 權益이 尊重되도록 努力한다.